

이사회 규정

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 34 조 제 2 항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 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업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회사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회장 및 이사를 역임한 분에 대하여 회사의 대외활동 및 경영에 대한 조언을 위해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 25 조 및 제 26 조에 따라 선임된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4 조의 2 (이사의 임기)

- ① 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.
- ② 사외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 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5 조 (의 장)

이사회 의장에 관하여는 정관 제 37 조 규정에 따른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종 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
단,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때 이사회 의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7 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,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①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결의권의 수는 출석한

이사의 결의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,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 (부의사항)

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상법상의 의결사항
 - ① 주주총회의 소집
 - ② 경영보고서의 승인
 - ③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승인
 - ④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⑤ 공동대표의 결정
 - ⑥ 지점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 - ⑦ 신주의 발행
 - ⑧ 사채의 모집
 - ⑨ 준비금의 자본전입
 - ⑩ 전환사채, 교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 - ⑪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2.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
 - ①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안
 - ② 사업계획
 - ③ 국내외 주요 신규 투자계획
 - ④ 그 외 회사 경영상 중대한 재무, 비재무적 리스크
3. 기타 법령 또는 정관,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 12 조 (긴급집행)

-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제①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제 13 조 (위 입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회내의 기구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그 소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주제별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 이사회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변경하여 결의할 수 있다.

제 13 조의 2 (이사회 내 소위원회)

- ① 이사회 내 소위원회는 多濫과 같이 구성한다.
 - ①-1 감사위원회
 - ①-2 운영소위원회
 - ①-3 재정소위원회
 - ①-4 이사소위원회
 - ①-5 기술소위원회
 - ①-6 기타소위원회
- ② 이사회 내 소위원회는 이사회 의 권한을 위임 받아 운영한다.

제 13 조의 3 (자문위원회)

이사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 14 조 (경영진)

- ① 정관 제 42 조 2 항에 의거, 회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.
- ② 경영진은 대표이사가 선임한다.
- ③ 경영진은 명예회장,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이사로 구분하며 명예회장, 회장, 부회장, 사장 및 경영진 중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라 칭하고, 경영진은 이사회 의 이사가 될 수 있다.
- ④ 경영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최고경영자가 정한다.
- ⑤ 경영진의 급여, 퇴직금 및 상여금과 업무상 필요한 제경비는 대

표이사가 정한다.

- ⑥ 회사의 설립과 경영, 기술혁신 등에 현저히 기여한 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경영성과급 지급은 대표이사가 정한다.

제 15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①항의 경우, 이사회는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이사의 의무)

- ① 이사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,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.
- ④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.

제 18 조 (이사회 지원)

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모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한다.

제 19 조 (사외이사 지원)

-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 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사외이사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.
- ② 회사는 이사회 참석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에게 음식물/선물, 교통비/출장비, 수당/사례비 등을 제공하며, 이사회 참석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한다.

부 칙 (시행일)

- 이 규정은 199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99년 5월 31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05년 6월 8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19년 8월 9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0년 2월 24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0년 3월 30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.

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사항

이사회 규정 제 13 조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함.

1. 건별 자본금 50% 미만의 기채
2. 수출입 관련 무역금융 및 지급보증 회전한도 설정
3. 어음할인, 매입 및 어음거래 약정
4. 자본금 10% 미만의 출자 또는 주식의 매입 및 매각
5. 자금운용을 위한 유가증권(주식제외)의 매입 및 매각
6. 기 승인된 투자사업 또는 PROJECT 에 관련한 소요자금의 제기채 및 지급보증
7. 거래금액이 자본금 10% 미만의 자금, 자산의 거래 또는 임대차
8. 기존 보증 및 기존 차입의 기간 연장
9. 기타 상법,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회사의 일상업무

2003 년 2 월 25 일